포천시 고시 제2023-584호

포천시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
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규정에 의거 “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2. 29.
포 천 시 장

1. 명칭 :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
2.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

- ○ 기준년도 : 2021년
- ○ 목표연도 : 2030년

3. 기본계획의 요지

- ○ 원도심 등 기성 시가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“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,
- ○ 노후·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정비, 기반시설 확충,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
- ○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

4. 정비예정구역 선정

구역명	면적(㎡)	사업 유형	용적률(%)		용도지역		비고
			기준	상한	현황	계획	
신읍1구역	97,728㎡	재개발	250	300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단계
군내1구역	43,299㎡	재개발	250	300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단계
소흘1구역	28,109㎡	재개발	250	300	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2단계
원일산호1구역	21,625㎡	재건축	250	300	제3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단계
우정1구역	38,513㎡	재건축	250	300	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2단계

*용도지역을 변경(종상향) 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기준용적률 적용

5. 주거생활권 설정

- ○ 도시지역 10개 지역을 주거생활권으로 설정하여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
  - 영북권 3개 주거생활권, 포천도심권 5개 주거생활권, 일동권 2개 주거생활권

② 주거생활권에서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) 추진시 역할

○ 공공부문

- 정비구역 지정 사전 검토서 작성 지원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 (소규모정비사업 포함)
- (필요시)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

○ 민간부문

- 주민 동의서 징구, 정비구역 지정 사전 검토 요청
- 정비사업 시행의 투명성 제고 등

7. 계획의 집행 및 관리

○ 1단계(2023년~2025년 정비구역지정), 2단계(2026년~2030년 정비구역지정)

3개소(신읍동 재개발 1개소, 군내면 재개발 1개소, 원일산호APT 1개소)	1단계
2개소(소흘읍 재개발 1개소, 우정APT 1개소)	2단계

주) 추후 타당성검토 (5년주기)시 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

8. 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열람 장소

○ 포천시 도시정책과 (제2별관 3층, 031-538-2485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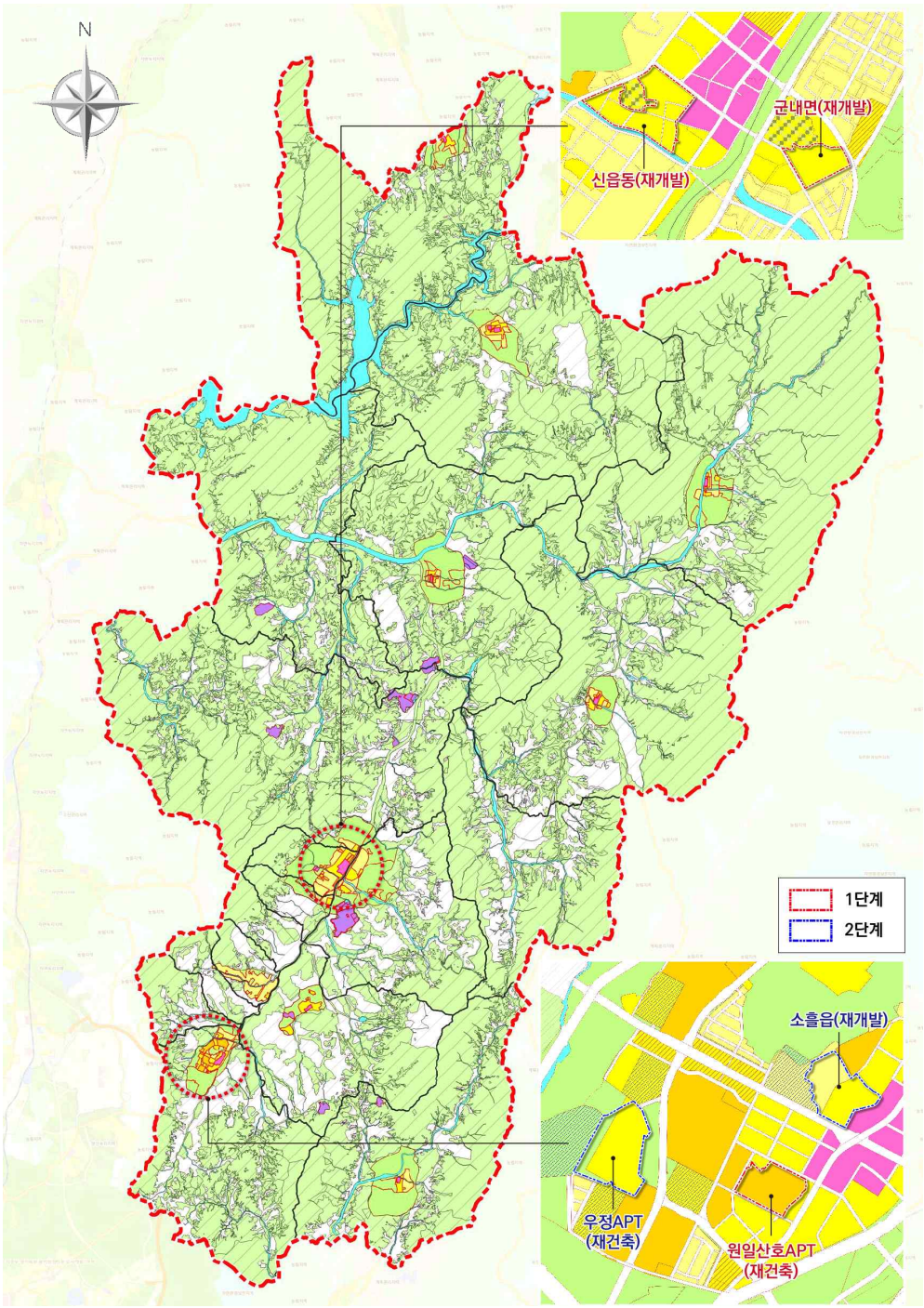
붙임1. 정비예정구역(단계별)